

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 (제5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처분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

1) 감경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

2) 가중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- 다)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의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9조 제2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9조 제2항제2호	시정명령	사업정지 1개월	지정취소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	법 제9조 제2항제3호	지정취소		